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1. 4. 20(화) 10:00

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573,437,951천원(일반 559,374,934천원 특별 14,063,017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 정 액			1회추경 (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73,437	561,021	545,733	15,288	12,416	
일반회계		559,374	546,958	532,501	14,457	12,416	
특별회계		14,063	14,063	13,232	831	0	
	의료급여기금	504	504	504	-	-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294	294	294	-	-	
	주차장	13,265	13,265	12,434	831	-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총 조성규모 45,408,39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액	비 고
총 조성 규모 ㉔ = ㉑ + ㉒		45,419,407	45,408,391	△11,016	
2020년도 말 조성액		33,110,432	33,258,149	147,717	
2021년 기금운 용계 획	수 입	6,916,295	6,916,295	-	
	지 출	7,633,095	7,791,828	158,733	
2021년 도 말 조성액 ㉑		32,393,632	32,382,616	△11,016	
용자 채권 회수 ㉒		13,025,775	13,025,775	-	

○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 :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20%이상)

(단위 : 천원)

변경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㉑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㉑ = ㉒ + ㉓ - ㉔	증 감 ㉑ = ㉒ - ㉓	비고
			수입㉒	지출㉓			
옥외광고 발전기금	변경전	1,094,674	159,000	117,200	1,136,474	41,800	
	변경후	1,242,391	159,000	275,933	1,125,458	△116,933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복 지 가 족 국	282,817,611	278,933,542	3,884,069	1.39%
복 지 정 책 과	10,673,336	10,359,338	313,998	3.03%
복 지 지 원 과	58,956,614	58,956,614	0	0
어 르 신 장 애 인 과	123,565,569	123,531,771	33,798	0.03%
여 성 가 족 과	70,311,488	68,966,641	1,344,847	1.95%
아 동 청 년 과	19,310,604	17,119,178	2,191,426	12.80%
도 시 안 전 국	16,829,946	14,894,946	1,935,000	12.99 %
주 택 과	446,489	446,489	0	0.00 %
안 전 도 시 과	4,245,457	3,222,457	1,023,000	31.75 %
도 시 계 획 과	2,162,380	1,972,380	190,000	9.63 %
건 축 과	432,261	432,261	0	0.00 %
공 원 녹 지 과	9,543,359	8,821,359	722,000	8.18 %
교 통 건 설 국	29,593,999	29,179,999	414,000	1.42 %
교 통 행 정 과	893,343	833,343	60,000	7.20 %
주 차 관 리 과	13,265,025	13,265,025	0	0.00 %
건 설 행 정 과	4,846,350	4,846,350	0	0.00 %
도 로 과	6,898,991	6,568,991	330,000	5.02 %
치 수 과	3,690,290	3,666,290	24,000	0.65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경 제 환 경 국	56,676,504	54,286,908	2,389,596	4.40 %
지 역 경 제 과	12,667,792	11,243,766	1,424,026	12.67 %
일 자 리 창 출 과	5,315,251	4,506,741	808,510	17.94 %
도 시 재 생 과	1,767,332	1,767,332	0	0.00 %
청 소 행 정 과	35,026,709	35,026,709	0	0.00 %
환 경 과	1,899,420	1,742,360	157,060	9.01 %

5. 교통건설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예산(안) ②
일반회계		16,328,974	15,914,974	414,000
교통행정과		893,343	833,343	60,000
교통 개선사업	◦ 주요내용 - 마을버스 업체 코로나19 피해지원 (시-자치구 민생경제 지원 대책)	210,590	150,590	60,000
도로과		6,898,991	6,568,991	330,000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 시행	308,860	8,860	300,000
신속한 제설대책	◦ 주요내용 - 호암대교 하부 제설전진기지 확보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실시설계 용역 시행	242,721	212,721	30,000
치수과		3,690,290	3,666,290	24,000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 주요내용 - 독산보도교 화장실 옆(제방 우안), 안양 천교 하부 화장실 옆(제방 좌안) 흙먼지떨이기 설치(2개소)	397,390	373,390	24,000

나. 기금운용 변경안

(단위 : 천원)

변경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 ⑤=④-①	감 ⑥=④-①	비고
		수입②	지출③				
옥외광고 발전기금	변경전	1,094,674	159,000	117,200	1,136,474	41,800	
	변경후	1,242,391	159,000	275,933	1,125,458	△116,933	

6. 검토의견

가. 추경예산안

-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 일반회계 4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63억 2,8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16%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교통행정과는 금회 6,000만원 증액하여 8억 9,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마을버스 업체에 한시적 지원금 지급
 - 도로과는 기정예산에서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 보상외 1개 사업 3억 3,000만원 증액 편성
 - 치수과는 기정예산에서 안양천 하천시설물 관리 사업 2,400만원 증액함

 - 교통건설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지원대책과 긴급현안사업 등에 중점하여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소관부서는 내실 있는 사업 집행으로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기정액	증감	항목	변경액	기정액	증감
합계	1,401,391	-	합계	1,401,391	1,253,674	147,717
이자수입	19,000	-	비용자성	275,933	117,200	158,733
기타수입	140,000	-	사업비			
예치금회수	1,242,391	-	예치금	1,125,458	1,136,474	△11,016

-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19로 인해 광고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사업 지원금 배분」에 따라 일정액의 광고비를 국비 지원함에 따라 기정액에서 1억 5,873만원이 증감된 지출 변경액을 반영하여 새로이 변경하고자 함
- 위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된 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